

국 토 교 통 부

훈계요구·통보

제 목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기장군청,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금정구청

훈계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과 지방○○○○ ○○○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 ○○과) 지방○○○○○○○ ○○○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과전○○○○과 지방○○○○○○○○ ○○○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과전○○○○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8. 3.부터 현재까지,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6. 6. 30.까지, 지방○○○○○○○○ ○○○은 2012. 7. 16.부터 2013. 12. 31.까지, 지방○○○○○ ○○○은 2014. 7. 1.부터 2016. 8. 9.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와 허가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장군(○○○○과)에서는 2016. 10.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강무제의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차고지 면적 확보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²⁰⁰⁾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전부정지(30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위 ○○○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불이행 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리는 문서를 통보하지 않는 등, 기장군 등 4개 구·군²⁰¹⁾에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운송사업자 ○○○ 등 387명의 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기장군수, 동래구청장, 해운대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수, 동래구청장,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은

[통보]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강무제 등 387명에

200)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1) 기장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전부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